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 김선교·김상훈·최수진

이헌승 • 윤상현 • 박충권

서천호 · 김예지 · 김성원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산림조합법」 32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다른 조합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함.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 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대의원의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 금지에 관한 법문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및 제60조의6).

법률 제 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중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임직원"을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의임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6 중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을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매입소각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2조(대의원회) ① ~ ④ (생 제32조(대의원회)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 ⑤ -----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 ----- 다른 조 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 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의 임직 워----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 ----- <u>우선출</u>자의 발행 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 ·모집·매입소각 등 -----•모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